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3.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양송이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시비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회 보고를 통해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區)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짐.

## ○ 주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등 조례 전체의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추진 사항, 안 제7조는 의회 보고 의무,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검토 해야하는 내용을, 안 제6조는 추진 상황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역할과 외부 전문 기관의 협조 추진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 구비 부담 사업은 분기별로 의회 보고 의무를 가지며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즉, 현행 공모사업의 진행 절차에서 '의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안 제8조는 공모사업 선정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 구(區) 공모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및 운영 절차의 규정을 위해 사전 검토 사항을 법제화시켰으며 총괄부서의 지정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례화된 보고 일정 확립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의회 보고 규정은 의회의 의결·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폭넓은 견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를 같이 함.
- 즉,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은 서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0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양송이, 임현호, 김지연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의원 (6인)

##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시비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